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2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2

I. 개요

1.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2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인요한의원 등 33인

(2) 제 안 일 : 2024. 7. 31.

(3) 회 부 일 : 2024. 8.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표시·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구급차등의 설계·제작 시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 ----- ----- 이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는 약 7,600여대인데, 이 중 96.1%에 해당하는 7,317대는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구급차로서 앞뒤길이(전장)는 5.12미터, 내부 폭은 1.9미터 정도로서, 15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중형 구급차에 비하여 앞뒤길이가 1미터 이상 짧아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튜브 삽관 등의 처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차량 내부가 좁아 구급대원이 효율적인 자세로 처치를 진행하기 어렵고, 여러 명의 구급대원이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동시에 진행하기 곤란하며, 자동심폐기 등 부피가 큰 장비를 수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¹⁾

< 구급차 현황 >

(단위: 대, %, 2023년 12월 기준)

구분	수	비율	비 고
소형(12인승)	7,317	96.1	- 주로 스타렉스, 스타리아를 개조
중형(15인승)	295	3.9	- 주로 쉐라티 개조 - 포드, 벤츠 등 기타 중형차량은 20여대로 추정
합계	7,612	100	

* 2023 응급의료 조사통계 구급차 현황(잠정치)

*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은 구급차에 대하여 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14년 7월 구급차 환자실의 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바 있음.

1) “구급차 96%, 비좁아 CPR도 어려운 ‘소형’”, 동아일보, 2023.7.31. <https://v.daum.net/v/202307310300581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3.]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2017.12.1., 일부개정]

[시행 2017.12.3.] [국토교통부령 제469호, 2017.12.1., 일부개정]

제4조(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①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구급차는 150센티미터 이상, 일반구급차는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개정안은 구급차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100센티미터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설계·제작 기준에 일정 공간의 확보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급차에 동승하는 구급대원이 차량 내부나 장비에 부딪힐 가능성을 줄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수납이 가능해져 보다 나은 응급의료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량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과 교체 기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100센티미터 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구급차 내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서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15%(31만 명)가 중증응급환자(KTAS 1, 2)인 점을 고려하면 이송 과정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충분한 처치 공간확보를 위해 차량이 커지면 주거 및 도로 여건, 교통상황 등에 따라 이송의 신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100센티미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차량은 특정 기업의 특정 자동차로 한정된다는 의견도 고려해 복수의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100센티미터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소방청 구급차는 5년, 다른 구급차는 9년(최대 11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3년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운행 연한이 남아있는 구급차를 말소해야 하므로 신규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이송에도 차질

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병원과 민간이송업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환자가 이송처 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음. 차량 구입 비용과 유지비가 상승함에 따라 운용비용이 증가하면 이송처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공공부문 구급차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일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차량의 제작 가능성과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응급구조사회) 응급환자에 대해 효율적인 응급처치,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의 안전을 위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나, 현 개정(안)으로 인한 기존 구급차의 변경에 필요한 유예기간 3년은 구급차 운행연한 9년에 비해 짧아 최근에 변경한 구급차량에 대한 유예기간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개정(안)의 100cm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차량만 구급차로 제작이 가능해 구급차량 종류에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음

- (대한병원협회)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함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는 일반 승합차(9~12인승)를 구매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개조한 후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10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 의료기관은 기존 운영 중인 대부분의 구급차를 폐기하고 중형급 승합차(15인승)로 교체가 불가피

하며, 3년 이내에 중형급 승합차(15인승)로 교체해야 한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새로 구입하는 구급차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법 개정 이전에 중형급 승합차의 수급 상황과 구급차 교체 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방안 등 선행 검토 필요

□ (응급환자이송업협의회) 현행 요금체계에서 구급차등의 기준이 강화, 개정되게 되면 차량가격, 유지비용 상승 등 구급차 운용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원책 없는 개정안은 수용불가

□ (국립중앙의료원) 구급차 내에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 환자 간이침대 사이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함.

정책적 지원이 없이 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구급차 보유 현황에 맞는 점진적 대책 마련이 선결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 시에도 기존 운행 중인 구급차는 운행연한까지는 유지가능하도록 하고, 신규 등록·운행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등) 차량의 제작환경, 여건 등에 따라 하위 법령에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작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개정안의 10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는 특정제작사의 단일 차종만 적용 가능하며, 이에 한정하는 것은 다양한 구급차 개발을 저해하고, 개정안 기준이 적용 가능한 크기의 구급차는 도로, 주거 여건상 구급차 운행에 많은 제한이 있어 국내 도로사정과 주거요건을 고려한 적정한 크기(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60cm기준 제시)의 차량을 신규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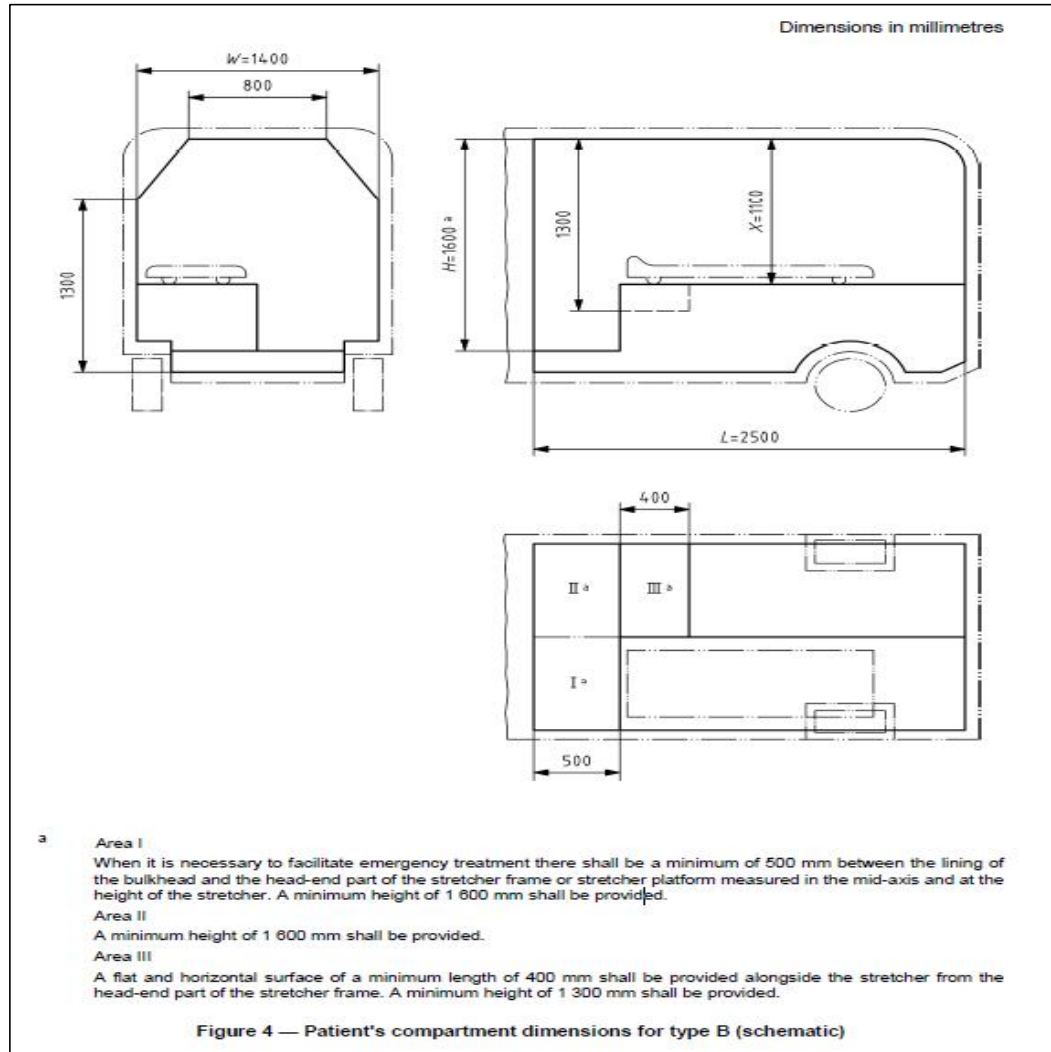
신차개발, 관련 금형, 부품 제작 등 개발 및 설계, 제작 기간을 고려하여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필요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량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구급차 규격 관련 해외 사례

○ 유럽표준위원회(CEN) 규정

: 칸막이부터 주들것까지 적어도 50센티미터의 공간 필요



○ 미국 CAAS(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mbulance Services) 규정

: 칸막이부터 주들것까지 적어도 25인치(63.5센티미터)의 공간 필요

C.11.4 PATIENT COMPARTMENT INTERIOR DIMENSIONAL PARAMETERS

The patient compartment shall provide a minimum of 325 cubic feet of space (275 cubic feet of space for a Type II), less volume for cabinets, while complying with the following:

1. The compartment configuration shall provide at least 25" of unobstructed space at the head of the primary patient, measured from the face of the backrest of the EMSP seat to the nearest edge of the cot.
2. The compartment shall provide a clear aisle walkway between the edge of the primary patient cot and base of the nearest vertical feature measured along the floor. Each end of the walkway shall provide access to a means of egress.
3. The patient compartment shall provide a minimum of 60" height, over the primary patient area, measured from floor to ceiling panels.